

의안번호	제282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23년 5월 31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82

제출연월일 : 2023년 5월 3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충청북도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바이오산업의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등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4조 및 제5조)
- 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안 제6조~제12조)
- 바이오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및 위탁 근거 (안 제13조)

3. 의안전문 : 불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취 : 불 임

6. 비용추계서

- 추계의 전제
 - 1) 추계기간 :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2) 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 수당 비용 및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
 - 3) 바이오의 중심지 충북 실현, 바이오산업 균형발전체계 구축,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 등 바이오산업 추진 관련 소 사업비
- 산출결과 : 신규사업 2건(307백만원), 기존사업 55건(287.978.5백만원)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산업”이란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한 제품, 서비스 등의 생산과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인간대상연구 관련 산업

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산업

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산업
라. 그 밖에 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신산업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바이오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2.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3. 국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창업, 기업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
6.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바이오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3.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바이오산업 관련 인력양성 시책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5.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6.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공모·평가에 대한 사항
7. 바이오산업 관련 산업체와 기술협력, 공동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바이오산업 관련 벤처기업 창업, 기술·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9.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충청북도의회 의원
2.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임직원

3. 바이오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바이오산업 육성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이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바이오산업 육성 추진)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육성

2. 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센터 등 신사업 기획 및 연구 사업

3.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시제품 제작, 상품화 등 기술개발
4. 바이오산업 관련 지원시설 및 연구개발장비 등 기반시설 조성
5. 바이오산업 관련 박람회, 전시회 등 행사, 홍보 및 정보교류
6.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창업·보육 및 시험·인증
7.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8.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
2. 국공립 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기업·법인 및 단체

제15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제14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등”이라 한다)에게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사업보고서의 작성·제출 등 수탁자등에게 필요한 보고서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등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지원의 중단 등) ①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를 중단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면 국내외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전담기구의 설치)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바이오산업 발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
 - 바이오의 중심지 충북 실현, 바이오산업 균형발전체계 구축,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지원 등 바이오산업 추진 관련 전 사업비
-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 운영비(수당 등)

3. 관련조문

- 안 제4조(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 안 제6조(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 안 제10조(회의의 운영)
- 안 제13조(바이오산업 육성 추진)
- 안 제14조(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 추계기간 :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2) 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 수당 비용 및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
- 3) 바이오의 중심지 충북 실현, 바이오산업 균형발전체계 구축,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지원 등 바이오산업 추진 관련 쏠 사업비

나. 추계결과

1) 산출과정

○ 신규사업

-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 : $1\text{식} \times 300,000\text{천원} = 300,000\text{천원}$
-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 수당 : $14\text{명} \times 100\text{천원} \times 5\text{회} = 7,000\text{천원}$

○ 기존사업

- 바이오 관련 쏠 지원 사업비 : 287,978.5백만원

2) 산출결과 :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288,285.5백만원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42%(120,541백만원), 도비 58%(167,744.5백만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6. 작성자 : 바이오식품의약국 첨단바이오과장 김종호(220-461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21,555	22,762	24,037	25,383	26,804	120,541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	6,822	7,204	7,607	8,033	8,483	38,150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	7,683	8,113	8,568	9,047	9,554	42,965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건립	300	317	335	353	373	1,678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 터 건립	3,750	3,960	4,182	4,416	4,663	20,971
	충주 지식산업센터 건립	3,000	3,168	3,345	3,533	3,731	16,777
세 출		33,548.9	33,548.9	33,548.9	33,548.9	33,548.9	167,744.5
	바이오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	90	90	90	90	90	450
	바이오기업 맞춤형 value-up 지원 사업	360	360	360	360	360	1,800
	3D생체조직칩 실증·상용화 지원 기반구축(대응) -경상경비	710	710	710	710	710	3,550
	3D생체조직칩 실증·상용화 지원 기반구축(대응) -자본경비	290	290	290	290	290	1,450
	의약품 전문박람회 참가 지원	130	130	130	130	130	650
	천연물·BT기 반 의료기기 인증플랫폼 구축(대응)	1,405	1,405	1,405	1,405	1,405	7,025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지원(대응)	50	50	50	50	50	250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차세대 체외진단기기 기술개발 지원	400	400	400	400	400	2,000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기술개발 지원	400	400	400	400	400	2,000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충북형 데이터 플랫폼 운영 기술 상용화 사업	400	400	400	400	400	2,000
	융합바이오세라 믹테크노베이터 구축(대응)	712	712	712	712	712	3,558
	일라이트 소재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80	80	80	80	80	400
	글로벌 한방·천연물 산업 육성 사업	420	420	420	420	420	2,100
	한방바이오 박람회 지원	460	460	460	460	460	2,300
	면역체계 증진 제품 개발지원	90	90	90	90	90	450
	천연물 활용 메디헬스 소재 및 제품 개발 지원사업	60	60	60	60	60	300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차세대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 은행 구축(대응)	300	300	300	300	300	1,500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	200	200	200	200	200	1,000
	K-의료기기 국내외 학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	150	150	150	150	150	750
	의료기기 스타기업 육성 지원	300	300	300	300	300	1,500
	화장품·뷰티산업 국제컨퍼런스 개최	45	45	45	45	45	225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뉴트랜드 화장품 원료개발 및 보급 지원사업	140	140	140	140	140	700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건립	100	100	100	100	100	500
	2023 오송화장품뷰티 산업엑스포 개최	2,800	2,800	2,800	2,800	2,800	14,000
	화장품 수출 컨설팅 지원	200	200	200	200	200	1,000
	스토리 기반의 충북 화장품 마케팅 통합지원사업	100	100	100	100	100	500
	국제 화장품 박람회 참가 지원	200	200	200	200	200	1,000
	화장품 소재 유효성 및 안전성 시험비 지원	100	100	100	100	100	500
	K-화장품 특화 브랜드 사업화 지원	200	200	200	200	200	1,000
	클린 뷰티 기술개발 지원 사업	100	100	100	100	100	500
	화장품 패키징 디자인 개발 지원	100	100	100	100	100	500
	오송 원헬스 융복합 센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100	100	100	100	100	500
	오송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출연금	2,400	2,400	2,400	2,400	2,400	12,000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대응)	50	50	50	50	50	250
	바이오 혁신경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	800	800	800	800	800	4,000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대응)	12,780	12,780	12,780	12,780	12,780	63,900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산학연 발전사업	360	360	360	360	360	1,800
	충북바이오산 학융합원 운영	490	490	490	490	490	2,450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 터 건립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충주 지식산업센터 건립	1,320	1,320	1,320	1,320	1,320	6,600
	바이오 창업 아카데미 개설 운영	200	200	200	200	200	1,000
	바이오 코리아 개최	385	385	385	385	385	1,925
	국제바이오의 과학실험경연 대회 개최	90	90	90	90	90	450
	충북 바이오 스타트업 밋업(Meet-up) 개최	40	40	40	40	40	200
	벤처 및 스타트업기업 공동연구장비 활용지원	120	120	120	120	120	600
	중양 이환 네트워크 연구센터 구축지원	100	100	100	100	100	500
	바이오제품 안전성 유효성 등 시험비용 지원	80	80	80	80	80	400
	생태환경 바이오 유해인자 발굴 및 제어 연구센터 구축 지원(대응)	100	100	100	100	100	500
	중증 폐질환 연구센터 구축 지원(대응)	100	100	100	100	100	500
	바이오기업 GMP인증 지원 사업	162	162	162	162	162	810
	바이오 국제공동연구 사업	180	180	180	180	180	900
	바이오세라믹 소재기업 역량강화 지원	250	250	250	250	250	1,250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전국규모 바이오 학술대회 공동개최	9	9	9	9	9	45
	글로벌 생명산업 협력 컨퍼런스 개최	40	40	40	40	40	200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	300	300	300	300	300	300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	1.4	1.4	1.4	1.4	1.4	7
재원 조달		54,818	56,025	57,300	58,646	60,067	288,285.5
의존 재원	소 계	21,555	22,762	24,037	25,383	26,804	120,541
	보조금	21,555	22,762	24,037	25,383	26,804	120,541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3,548.9	33,548.9	33,548.9	33,548.9	33,548.9	167,744.5
	지방세	33,548.9	33,548.9	33,548.9	33,548.9	33,548.9	167,744.5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구·군비							
기 타							